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87
----------	------

2025년 9월 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

가. 제안이유

-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민원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과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임.
-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성과와 개선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공항소음 또는 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 위탁유형: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위탁기간: 3년('26.1.1. ~ '28.12.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5.7.16.)
- 소요예산(안): 781백만원(민간위탁금, '26년 기준)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3) 주요 위탁 사무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대효과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대 및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
- 위탁사무 통합관리로 주민 요구사항에 효율적 대응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편성 시 반영
- 다. 기 타: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남권 공향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향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하나의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검토

- 본 동의안은 공향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공향소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공향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¹⁾와 제6조²⁾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무는 기존의 주민지원 사무의 종료일(’25년 말)에 맞춰 조직개편 후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월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³⁾이 수립되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정⁴⁾으로 심의하였으며, 관련 절차⁵⁾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1)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3) 공향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신규)(생활환경과-9907, ’25.7.9.).

4)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생활환경과)(조직담당관-7388 ’25.7.18.).

5)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現수탁법인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운영	사무형 신규(통합)	서남권: (사)항공기소음 고척동: (사)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3년 이내	적정

2) 조직개편 타당성 검토

- 현행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는 ‘서남권 주민지원센터’와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로 나누어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이중 서남권 주민지원센터는 1개 본소와 3개 분소로 운영되고 있음.

센터 및 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22년)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24년)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 부족, 인건비 과다, 센터와 분소의 역할 불분명으로 분소 운영의 불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⁶⁾에서도 센터와 분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 측면에서 분소 업무를 센터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업무 조정과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현황>

구 분	서남권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 본소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독산동	구로구 고척동
개 원	2016.11.	2020.8.	2020.8.	2020.8.	2020.9.
수탁기관 (기간)	(사)항공기소음 (’25.1.1.~’25.12.31.)				(사)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23.1.1.~’25.12.31.)
운영 인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담당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센터장 1, 사무지원 1
	4명	2명	2명	2명	2명

- 세부적으로 고척동 주민지원센터(고척동)와 서남권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구로동)는 구로구 관내에 위치함에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고 금천분소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분소 민원 접수·처리 건수⁷⁾에 있어서도 센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6)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25.7.,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고척동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25.7., 서울특별시).

7) 최근 3년, 센터 1일 업무 처리량(약 21.8건/일), 분소 1일 업무 처리량(약 8.2건/일).

-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센터와 분소의 기능 재정립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조직	2센터 3분소	1센터 1분소
조직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4명 강서분소 2명 구로분소 2명 금천분소 2명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2명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5명 ※ 4개구 총괄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분소 3명

3) 민간위탁금 적정성 검토

- 현행 2센터 3분소(근무인원 12명) 체계를 1센터 1분소(8명)로 통합 개편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위탁금은 약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6년 민간위탁금 7억 8천1백만원(인건비(53%), 운영비(15%), 사업비(32%))로 구성되며, 인건비 비율이 63%(’25년)에서 53%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업비가 22%(’25년)에서 32%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 통합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2025년과 2026년(계획) 민간위탁금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본소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주민지원센터	분소	
예산	473	128	129	128	167	('26년 기준) 781(계획)		
	('25년 기준) 1,025							
구성비	인건비 643(63%)		운영비 156(15%)		사업비 226(22%)	인건비 417(53%)	운영비 118(15%)	사업비 246(32%)

다만,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분소 수가 줄어든 만큼 주민 서비스 연속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등 운영 방안 개선이 필요할 것임.

참 고

2026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예산내역(안)

(단위 : 천원)

항목	내역	센터	분소	합계	구성비
인건비	기본급	182,718	95,411	278,129	35.6%
	제수당	52,329	21,108	73,437	9.4%
	퇴직충당금	19,587	9,710	29,297	3.8%
	보험료	23,711	11,926	35,637	4.6%
소계		278,345	138,155	416,500	53.3%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39,120	10,080	49,200	6.3%
	자문수당, 우편통신비, 소모품	7,542	5,149	12,691	1.6%
	무인경비 시스템, 사무실 관리·보수비	29,124	5,668	34,792	4.5%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750	1,970	5,720	0.7%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매	9,907	5,895	15,802	2.0%
소계		89,443	28,762	118,205	15.1%
사업비	사무공간 조성, 임대보증금	50,000	26,500	76,500	9.8%
	주민참여 행사개최 및 강좌 운영	63,520	775	64,295	8.2%
	항공기 소음 측정, 분석	23,563	-	23,563	3.0%
	찾아가는 공항소음 상담서비스	15,602	29,665	45,267	5.8%
	정기 간행물, 홍보물 제작	29,892	-	29,892	3.8%
	고객 만족도 조사, 직무 교육	6,540	-	6,540	0.8%
소계		189,117	56,940	246,057	31.5%
합계		556,905	223,857	780,762	100.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8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민원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임
-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성과, 개선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다. 공항소음 또는 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 나.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마. 위탁사무 내용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위탁기간 : 3년 ('26. 1. 1. ~ '28.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아. 소요예산 : 781백만원(민간위탁금, '26년 기준)

자. 기대효과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대 및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
- 위탁사무 통합관리로 주민 요구사항에 효율적 대응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7.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백윤미 (☎2133-4254)